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-167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. 11. 19.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특별 휴가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하고,
-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성 있는 공무원증 규격을 일치화하기 위해 정부 지정 공무원증 발급기관인 ‘한국조폐공사’로 변경하고자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칙」을 준용하는 내용을 반영하고,
-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담아 당직수당 지급 조례가 별도로 존속하여 자치법규 운영에 비효율적이었던 부분의 개선하고자 하며,
- 그 밖에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’에 따라 표현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당직수당은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」에 따름 (제7조의2)
- 나. 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칙」 준용 (제11조)
- 다. 육아시간 사용범위 확대(24개월→36개월) (제14조)
- 라.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 확대(1일→3일) [별표 3]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, 「지방자치법」 등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)

다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당직수당의 지급) 당직근무자에게는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」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공무원의 신분증”을 “공무원증(모바일 공무원증 포함)의”로,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증 규정」”을 “「국가공무원 복무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연가계획 및 허가)”를 “(연가계획 및 승인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허가”를 각각 “승인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언을”을 “사용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24개월의 범위에서 받을”을 “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언을”을 “사용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허가”를 “승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“4시간 이상”을 “4시간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”를 “모성보호시간의 같은 날 사용을 승인”으로, “시간외 근무”를 “시간외근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 중 “받을”을 각각 “사용할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」를 폐지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 <p>제11조(복장 및 제복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증 규정」을 준용한다.</u></p> <p>제13조 (<u>연가계획 및 허가</u>) ① (생 략)</p> <p>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<u>허가</u>할 수 있으며,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.</p> <p>③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<u>허가</u>하여야 한다.</p> <p>제14조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<u>얻을</u></p>	<p><u>제7조의2(당직수당의 지급) 당직근무자에게는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」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한다.</u></p> <p>제11조(복장 및 제복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공무원증(모바일 공무원증 포함)의 -----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칙」-----</u> -----.</p> <p>제13조 (<u>연가계획 및 승인</u>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승인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승인</u>-----.</p> <p>제14조(특별휴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용</u></p>

⑦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날의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이상(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는 3시간 이상으로 한다)이 되어야 한다. 다만, 의장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,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.

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⑨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⑦ -----

-- 4시간 이상-----

----- 모성보호시간의
같은 날 사용을 승인-----

----- 시간외근무
-----.

⑧ -----

사용할 ----.

⑨ -----

----- 사용
할 ----.

[별표 3] 경조사별 휴가일수표

[별표 3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

(제14조 관련)

구분	대.....상	일수
결혼	본인	5
	자녀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출산	배우자	10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)
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사망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	본인	20

* 비고 : 입양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적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광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[별표 3] 경조사별 휴가일수표

[별표 3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

(제14조 관련)

구분	대.....상	일수
결혼	본인	5
	자녀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출산	배우자	10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)
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사망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	본인	20

* 비고 : 입양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적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광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안 제11조(복장 및 제복)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른 추가발급 비용 발생 예상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2항에 해당

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) ① (생략)

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(이하 생략)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의회사무국 의정팀 전동훈
연 락 처	02-3153-6162

관 계 법 령

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,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.

□ 국가공무원 복무규칙

제58조(공무원증의 규격·양식 및 기재사항 등) ①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, 공무원증의 양식, 특수인쇄 및 그 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46조(실비보상 등)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.

□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
제7조(당직 및 비상근무)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

제4조(기준경비)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5.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, 일·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,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, 행사 차출 지급경비는 별표 7의1과 같다.